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200호
- 발의자 : 채수지 의원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 제안이유

- 동 조례 제14조제3항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제보 내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산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와 상위 법령과의 규정 체계가 상이함.
- 따라서 동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 · 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함(안 제14조).

### **IV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다 .입법예고: 2025. 10. 28. ~ 11. 1.(의견 :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채수지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0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상금 산정·집행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14조제3항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산정시 공익침해행위를 개별 단위(‘개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건별 3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sup>.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①법 제26조의2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이는 법 시행령 제정(2011년) 당시부터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유지해 온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규정을 정비·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23~'25.9.)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접수는 188건 ('23) → 103건('24) → 74건('25.9.)으로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 더욱이 보상금 지급은 최근 3년 동안 '23년 1건(20,859,560원)에 그치고 있어, 같은 기간 포상금('23년 4건, 14,500,000원) 및 구조금 지원(총 28건, 285,851,310원) 대비 상대적으로 지급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보상제도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로 구분되며,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재정상 이익에 대한 금전적 보상, 포상금은 공로에 대한 격려, 구조금은 신고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sup>2)</sup>.

---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구조금 등 지원)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입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
3.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으로 하되, 그 산정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14조(보상금)① 공익제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표-1]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접수 현황(2023~2025년)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9.	합계
건 수	188	103	74	365

\*출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 [표-2] 최근 3년간(2023~2025.9.) 서울시교육청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상금	1	20,859,560	-	-	-	-
포상금	4	14,500,000	-	-	-	-
구조금	28	285,851,310	15	128,896,210	7	32,114,350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보상금 산정 기준에서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은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신고의 경우에도 각 행위별로 독립적으로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복·유사 제보에 따른 산정 혼선을 방지하고 보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이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형평성이 높아지고, 유사 사례 간 집행 기준의 일관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따라서 안 제14조제3항과 같이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명확히

---

제15조(포상금)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규정한 것은 제보자의 실질적 보상 체감도를 높이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법 시행령이 보상금 지급 제외 하한액을 10만원('11.9.30.) → 20만원('14.9.2.) → 30만원('23.12.19.)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조례는 제정 당시(2014년)와 동일하게 하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sup>3)</sup>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8호, 2011. 9. 30., 제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 2014. 9. 2., 일부개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